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범죄 사형제도의 발전 및 국가 정황

莫 洪 宪*

I. 개념의 한계

1. 마약범죄사형제도

최협의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마약범죄사형제도란 현재의 입법적 문건으로 마약범죄 사형문제에 관한 문자적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원고는 마약범죄 사형제도와 국가정황의 관계 연구를 위해 더 넓은 관점과 시야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마약범죄 사형적용과 관련이 없는 많은 제도도 역시 고려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마약범죄에 관련된 기타 형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마약상용자 처우에 관한 제도, 이 모두가 마약범죄 사형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가 고찰하려는 것은 광의의 마약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마약제도는 문자로만 표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더 많은 경우 사회생활의 현실적 운용과 관련된다. 따라서 비록 공식적인 법률문서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제도화된 많은 구체적 운용도 마약제도의 일부분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남녕(南宁) 회담요록”, “대련(大连) 회담요록”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률문서의 내용을 분석할때에는 반드시 동법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문서의 내용과 제도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무한대학교 형사법연구센터 주임, 법학박사, 교수; 중국형법학연구회부회장

그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제도는 상이한 차원으로 구현되는데, 즉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있고 지방적 제도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은 전국적인 입법 혹은 사법해석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각급 지방사법기관에서 제정한 마약문제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규정도 포함하여야 한다.

요컨대, 비록 본고가 연구하려는 핵심적 문제는 마약범죄사형제도이고 최종적 결론도 전국적 입법쪽을 가리키겠지만 고찰하는 제도범위는 마약현상 전반에 미치고 서면상 그리고 실천상의 제도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여러 차원을 포함한다.

2. 마약범죄사형제도와 관련한 국가정황

“중국의 국가정황”은 아주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기에 반드시 구체적 문제와 결부하여 “국가정황”을 구체화하므로써 그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마약범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정황”의 고찰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우선 중국의 마약범죄의 현황과 중국 마약범죄의 단속상황이다; 전자는 마약범죄의 발생과 관련되고 후자는 마약범죄의 억제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마약관련행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다. 마약범죄가 가져온 위해 및 마약사용이 가져온 사회 부작용적 효과를 포함한 내용이 고찰하는 중점내용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비적으로 마약관련행위에 대한 억제상황도 “국가정황”의 중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의 태도도 “국가정황”의 고찰범위에 넣어야 한다. 비록 민중들의 태도는 일종의 사회심리적 차원의 느낌이지만 이런 느낌은 완전한 관념형태가 아니라 물질적 차원의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즉 이런 느낌은 마약관련행위의 위해상황이 민중의 내심속에서의 반영이다. 설사 경험적인 각도에서 분석하지 않더라도 민중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현대 민주가치의 표현형식의 하나이므로 중국 마약제도의 발전 방향도 당연히 민주의 금지구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요컨대 마약범죄사형제도와 관련한 국가정황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면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다.

- (1) 마약범죄의 현황 및 그 예방상황
- (2) 마약관련행위가 가져온 사회적 위해 및 그 억제상황

(3) 마약현상에 대한 민중의 태도

위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필자는 건국때부터 지금까지의 마약사형제도의 발전 및 마약사형제도와 국가정황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여 어떤 법칙을 얻어냄과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금후 마약범죄사형제도의 발전추세를 탐색하려고 한다.

II. 개혁개방 이전의 마약제도의 발전 및 당시의 국가정황

1. 개혁개방 이전의 마약제도

협의를 입장에서 보면 개혁개방이전에 중국에는 마약범죄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의 법률은 마약범죄에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79년도형법” 171조 마약제조, 판매, 운송죄가 규정한 최고법정형은 15년 유기징역이다. 물론 이는 당시의 중국에 마약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950년 5월 24일, 중앙인민정부는 <아편, 아편독 염금에 관한 명령>을 반포하였고 각급 정부의 민정 부서에 마약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귀비 재배를 근절할 것과 민간은 생아편과 마약을 제출할 것 그리고 마약중독자는 지정 기일내에 등록하고 치료할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여 마약중독 치료에 의료상의 도움을 제공하였다. 1952년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는 <마약성행의 소탕에 관한 지시>를 반포하였고公安부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마약금지운동의 전개에 관한 보고>를 반포하여 전국에서는 대규모의 마약금지운동을 전개하였다.¹⁾ 가히 건국초기 중국은 서면상으로 마약제도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약제도의 집행도 현실 속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赵翔 등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99~102면 참조.

2. 개혁개방 이전 마약과 관련된 국가정황

건국초기 대규모의 마약금지운동을 통하여 중국 정부는 1953년부터 중국이 “마약 청정국”이 되었다고 선포하였다²⁾. 이런 상황은 개혁개방 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되었으며, 그 후 20여년 이래 마약은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근절된 상태였고 다만 변경지구에서 소량의 마약관련행위가 발생했을 뿐이었다³⁾. 그러므로 이 역사 시기에서 마약범죄의 단속상황은 비교적 좋았다고 볼 수 있다. 마약복용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기에 마약현상이 사회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현실적 배경하에서 민중은 자연히 마약현상에 대하여 가혹한 처벌을 가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79년도형법”이 마약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최고법정형은 “단지” 15년”뿐이었고 민중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단지 의식적 형태만으로 민중의 의견을 분석하면 이런 현상은 분명히 해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배경하에서 민중이 서방의 보편적 가치(특히 인도주의)를 받아들인 정도는 오늘과 비교도 안되고 게다가 그 당시의 민중은 마약복용이라는 “부패한 자본주의 생활방식”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지만 사형이 없는 마약범죄 입법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험적 차원의 내용을 결부하여 민중의 가치선택을 이해하여야만 합리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하에서는 사회는 고도의 동일성을 구비하였고 전체 국민은 공통의 정신적 추구가 있었다; 다른 한 면으로 당시 물질적 재화가 부족하였기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마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 외에 정부의 감시, 관리와 군중의 감독이 어느 곳이나 곳곳에 존재하였고 개인적 공간이 협소하였으며 게다가 입법과 정책의 집행이 효과적이었기에 마약범죄는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쇠국상태에 처해있었기에 해외마약의 침투와 경유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중형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 원인은 그 당시 경험적 차원의 것이었고, 민중의 가치선택은 경험적 차원의 수요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赵翊东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101면 참조.

3) 高铭瑄편저 <신중국형법의 배태와 탄생> 법률출판사 1981년 231면참조.

III. 개혁개방과 “97년도형법” 사이의 마약사형제도와 국정상황

1. 제도차원의 변천

개혁개방이 된 이래로 “97년도형법”의 탄생까지는 마약범죄 사형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단계이다. 1982년 3월8일 제5차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한 범죄자를 엄벌할 것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여 “79년도형법”중 마약범죄(마약제조, 운수, 판매죄)의 최고법정형을 사형으로 상승시켰다. 1988년 1월 21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밀수죄처벌에 관한 보충규정>은 마약밀수죄에 사형을 규정하였다. 1990년 12월 28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은 마약밀수, 판매, 운수, 제조죄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사형을 설치함과 동시에 마약범죄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정>은 “97년도형법”중 마약범죄에 관한 규정의 원형이 되었다. 절차적 제도면에서 나날이 창궐하는 마약범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 잇달아 운남, 광둥 등 5개성, 자치구의 고급인민법원에 마약사형사건의 일부에 관하여 사형심사 비준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단계에서 마약제도는 문자적으로는 대폭 추진되었지만 결합도 존재하였다. 한 가지 결합으로 많은 경우에 제도는 문자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집행력의 흠결이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사법기관은 이 기간에 수차례의 “엄격한 단속” 운동을 전개하였고 마약범죄를 엄격한 단속의 중요대상 중 하나로 삼았지만 수사수단이 낙후하고 수사역량이 박약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엄격한 단속”은 마약현상 전반을 겨누지 못했고 가혹한 형벌은 체포된 소수의 마약범죄자에게만 적용했을 뿐이었다. 이런 “엄격한 단속”은 마약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로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결합으로 당시의 제도는 주로 형법의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 조치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 전문은 마약범죄에 관한 처벌만 규정하였고 마약중독치료 등 사회적 차원의 조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제도배후의 국가정황

20세기 80년대 초기부터 “개혁개방”의 기본 국책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개혁은 억제된 생산력을 해방하여 사회적 부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개방은 나라의 대문을 열었기에 외국문화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화와 부의 증가는 표면적인 효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의식이 풍족하면 더 많은 욕심이 생기듯이, 재화와 부는 역시 기형적인 정신적 추구에 물질적 기초를 닦아 줄수도 있는 것이다. 나라의 대문을 열어 받아들인 것이 다 문명적인 것은 아니고 대량의 사회적 문제도 들어왔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결부되고 게다가 “마약 청정국”의 역사가 가져온 제도상의 소홀로 인하여 마약범죄는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대문을 열 때는 마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나라가 마약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조치를 취할 때였다. 양측 국가들의 형제적 차이로 인하여 중국은 해외마약운송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기러기가 날아가면 소리를 남긴다고, 마약의 경유는 경유지에 후환을 남기기 마련이다. 사회적 재화와 부의 증가, 그리고 사회분화, 정통적 가치관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본토의 소비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국내 마약소비시장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만연하였다⁴⁾. 이것이 바로 당시 마약범죄의 형세였다.

마약범죄의 급속한 발전형세와 대응되는 것은 마약범죄방지, 억제 능력의 감퇴이다. 우선 개혁은 전통사회의 규제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와해시켰다. 개혁전의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잘 아는 사람의 사회”는 “낯선 사람의 사회”에 의해 교체되었고 군중들간의 감독작용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종전의 통일적인 생활모델은 자유주의에 의해 와해되었고 공동한 정신적 응집력도 다원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흐트러졌다. 이는 마약소비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였고 소비만 있으면 마약범죄집단은 이익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로 침투하는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마약범죄 억제역량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었다. 당시의 수사수단으로는 분명히 대형 마약범죄조직에 대항할 수 없었고 점점 심각해지는 부패현상도 마약범죄에

4) 赵翔 등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103~105면 참조.

대항하는 역량을 소모시켰다. 그리하여 마약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졌고 사회에 거대한 손해를 가져왔다. 마약은 마약상용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회에 파멸적인 영향을 가져왔고 대량의 재화와 부를 소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살인, 절도, 강도, 강탈, 사기등 치안문제와 사회문제를 유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해남(海南)성의 강도, 강탈사건의 80%는 마약상용자가 저지른 것이었다⁵⁾. 이런 현상들은 필연적으로 마약현상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물질적 재화와 부가 풍부해짐에 따라 정신적 역량과 능력은 점차 궁핍해지는데” 민중은 마약범죄에 대한 반감이 나날이 격심해졌다. 따라서 중형으로 마약범죄를 다스리는 것 역시 민중의 기초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IV. “97년도형법” 이래 마약사형제도의 변화와 국가정황

1. 제도차원의 새로운 변화

“97년도형법”이후의 마약 관련 형사입법은 사형과 마약범죄에 대한 강압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협의의 마약사형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단계는 종전제도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거시적인 발전방향은 상당한 정도로 마약범죄 사형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마약범죄 사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분석하여야 한다. 사형제도의 거시적인 발전추세의 기본내용은 사형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형식으로서 형사정책의 거시적 선도와 지도를 포함하며, 실체법상의 규정(예를 들면 75세이상의 노인이 마약범죄를 범했을 경우 더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과 함께 사형사건심리에 관한 절차적인 제한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3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심사비준권을 회수뿐만 아니라, “2원3부(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2010년 공동반포한 <형사건증 증거심사판단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과 <형사사건증 불법증거배제

5) 赵翔 등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109면 참조.

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사법기관에서는 형사정책의 선도와 입법을 한층 더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면 2000년 <최고인민법원의 전국법원 마약범죄 사건심리업무좌담회 회담요록> (“남녕회담요록”), 2007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부의 <마약범죄 사건중 법률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 2008년 <전국 일부법원 마약범죄사건심리업무좌담회 회담요록> (“대련회담요록”) 등이다. 이상의 문건들은 마약범죄의 증거기준을 조정하고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며 (주범과 종범을 구분, 특정 집단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처리), 마약의 종류를 구별하여 처리 (신형마약범죄의 사형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사형적용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다. 적지 않는 지방사법기관에서는 현지의 마약범죄 현상에 근거하여 현지에서 적용하는 마약범죄 사형제도를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광둥성의 <신형마약범죄사건의 정죄양형문제에 관한 지도의견>, 상해시의 <상해법원 양형지침——마약범죄1>, 운남성 고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公安청, 사법청(지방성급 법무부)에서 공동반포한 <마약사건 재산형 적용문제에 관한 의견(시행)> 등이다. 이런 지방성 문건을 통하여 마약제도의 지역적 차이가 점차적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집행력도 이 단계에서 높아졌고, 처벌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합정수사 등 조치가 수사단계에 도입되었으며 자수, 입공(立功)등 제도의 잠재력도 충분히 개발되었다.

물론 이 기간에 광의의 마약제도도 큰 발전을 가져왔고 사회적 조치가 형벌에 대한 대체적 효과로 점차 드러났다. 2007년에 반포되고 2008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마약금지법>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재배금지, 제조금지, 판매금지, 복용금지를 병행하는 등 사회가 광범히 참여”하는 방침과 규제시스템을 확립하였고 지역에서의 마약중독치료, 의료기관에서의 마약중독치료, 강제격리 마약중독치료 등 여러 방면의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마약금지에 관한 국제협력에 대하여 구조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형법이외의 단속조치가 점차적으로 중시를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의 마약중독치료, 마약대체약품의 연구개발 등이 그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중국은 기술원조, 농업지원, 관광자원개발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미얀마와 라오스의 북부가 전통적인 양귀비 재배지역에서 대체(代替)적인 발전사업을 전개하도록 도와주어⁶⁾ 마약발원지로서 중국에 주는 압력을

경감시켰다.

물론 이 제도들의 집행차원에서의 추진은 한층 심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중독 치료약품의 연구개발, 마약중독치료의 구체적 조작법, 그리고 국제협력은 막 시작된 단계이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문제의 관건이 더 이상 관념형태의 개선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가치적 차원에서의 비난은 의의가 없으며 실재적인 행동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런 행동들은 중국 자신의 노력에만 의거하여서는 안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다방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2. 제도 배후의 국가정황의 발전

이 시기에 중국이 직면한 마약범죄의 총체적 형세는 해외마약침투의 기세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 입국, 전면침투의 추세로 나타났다. 서남 변경 “금삼각” 지역의 마약재배면적은 감소되었지만 서북 변경에서 새로운 마약기지인 “금신월(金新月)”이 나타났고 그 잠재적 위협은 “금삼각”을 초월하였다. 지금의 마약판매는 내외적으로 결탁하고 단계별로 분담판매하는 모델로 나타났으며 대형의 마약판매망을 형성하였다.⁷⁾ 이와 동시에 중국은 또 해외마약 공급과 판매의 경유지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소비하는 마약의 일부도 중국 변경과 중국 홍콩을 경유하여야 한다.⁸⁾ 이는 역시 중국 마약문제해결에 부담을 더했다. 현재의 형사적 역량은 주로 해외마약침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의 마약제조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빙독(冰毒, 메스암페타민)”, “요두환(摇头丸, 엑스터시)”의 제조는 이미 광둥, 복건 등 지역으로부터 중국 내지의 열 몇개의 성까지 점차적으로 만연하였을 뿐만아니라 국내의 화공의약기업도 마약제조업에 점차 참여하였다.⁹⁾ 그리하여 마

6) 赵翔等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135면 참조.

7) 杨玲、李明军等 <마약복용, 중독치료문제연구——심리학으로부터의 탐색> 과학출판사 2010년 18면참조.

8) 赵翔等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5면 참조.

9) 杨玲、李明军等 <마약복용, 중독치료문제연구——심리학으로부터의 탐색> 과학출판사 2010년

약전쟁은 내외적 협공을 당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소비자시장으로부터 보면 지금의 마약복용자는 주로 무직업자와 사회유휴인원이지만 기업직원, 개인사업가, 연예인까지 확대되었다.¹⁰⁾ 마약소비집단은 이미 사회하층으로부터 사회중상층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마약의 위해성의 파급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단속의 어려움도 역시 점점 더 높아졌다. 중국은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여 마약현상에 대응하였지만 그 효과는 뚜렷하지 못하였다.

마약범죄의 기세와 더불어 마약범죄가 가져온 위해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마약사용자가 사회하층으로부터 사회중상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마약범죄 자체의 위해도 다양화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신형마약의 중독작용은 헤로인 등 전통마약보다 약하고 사회중상층(연예인등)의 마약복용에 대하여 민중들의 비난은 점차적으로 마약범죄 자체로부터 마약복용자로 옮겨졌다. 그 외에 사회가 개화됨에 따라 민중들도 일부의 다른 가치관념들을 용인할수 있게 되었기에 일반적인 마약범죄에 대하여 민중들도 이미 일정한 정도의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민중들도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마약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 즉 마약사용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는 이 방면의 노력을 통하여 상류층의 마약행위에 대한 민중들의 비난적인 정서를 경감시켰다. 이는 역시 사형제한을 추진시킬수 있는 사회심리적 기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마약범죄 (예를 들면 다국적 마약범죄집단, 무장마약밀수 등 형식)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국가의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거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고 민중들은 이런 심각한 마약범죄를 강력히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약사형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민중적인 기초라고 할 것이다.

19면참조.

10) 杨玲、李明军 등 <마약복용, 중독치료문제연구——심리학으로부터의 탐색> 과학출판사 2010년 19면참조.

V. 결론과 전망

1. 결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협의의 마약범죄 사형제도는 “무에서 유로—점차적 강화—조절과 통제를 받는” 발전과정을 거쳤고 마약제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중국은 “다양화—단일화—다양화”의 과정을 거쳤다. 제도의 집행력 방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전은 제도의 집행력이 가장 강한 시기였고 개혁개방 후는 집행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으며 근년에 와서는 일정한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마약현상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이 방면에서의 제고의 여지는 아주 크다고 봐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마약제도는 점차적으로 통일적인 구조로부터 다양화의 모델로 발전하였고 각 지방의 유익한 탐색과 탐구는 점차적으로 자유발휘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마약범죄 사형제도와 국가정황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한 가지 기본적인 결론을 얻어 낼수 있다. 즉 마약범죄 사형제도는 마약범죄의 형세, 국가와 사회가 마약범죄를 억제하는 능력, 비형법적 조치의 완비성, 마약현상이 가져온 사회적 위해 등 경험적 차원의 요소와 관련된다. 마약현상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는 사회심리적 차원에서의 경험적 요소의 반영이므로 경험적 차원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국의 마약제도의 상황과도 연결된다. 현재 마약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지 않은 나라는 아래와 같은 기본특징이 있다. 즉 다수는 서방의 선진국이다; 역사상 마약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며; 마약의 생산지나 경유지가 아니고 단지 마약의 소비지였다; 민주화, 법제화의 정도가 높으며; 많은 경우에 이런 나라들의 방침은 마약이 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¹¹⁾과 동시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마약소비행위를 다스리는 것이다. 마약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나라는 중국, 타이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이란, 스리랑카, 이집트, 베트남, 한국 등이다.¹²⁾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마약현상을 관리하는 대체(代替)적 조

11) 李世清 <마약범죄형벌문제의 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11년 94면 참조.

12) 李世清 <마약범죄형벌문제의 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11년 92~93면 참조.

치가 보편적으로 완비되지 못하였고¹³⁾ 또 이 나라들은 마약생산지가 아니면 마약의 주요 경유지이다. 마약범죄 사형제도를 규정하느냐는 많은 경우에 마약범죄 억제 필요성과 그 능력사이의 대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전망

역사에 대한 회고를 통해 현재 마약범죄의 형세와 관련하여 금후 마약범죄의 단속 추세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마약범죄 사형적용에 대한 제한은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추세이다. 그 구체적인 추진방식은 여러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다. 행위주체면에서 상이한 마약범죄자를 구별하여 대우할 수 있다. 즉 사형을 마약공급, 판매구조중의 중상층과 핵심적 인물에 적용하고 하층인물과 종속적 지위에 처한 인물(하수인,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농민공·등 특수집단)에 대하여서는 관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¹⁴⁾ 이와 동시에 전통적 형법제도(예를 들면 자수, 자백, 입공 등)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벌금형의 역할도 충분히 중시하여 사형적용의 공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증명요구를 높임으로써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입법상 사형의 존재는 여전히 단기내에 회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사형의 존재는 마약범죄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세계 마약의 추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삼각”마약의 전통적 통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이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이 나라들에서는 극히 엄격한 처벌수단을 규정하였다. 즉 헤로인 15그램 이상 혹은 일정한 수량의 기타 마약을 소지한 자는 일률적으로 사형에 처하였다. 이런 가혹한 입법은 마약의 유통통로를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이동시켰다”.¹⁵⁾ 이는 경험적 차원에서의 마약범죄 사형제도의 유효성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상류(마약공급원과 판매

13) 李世清 <마약범죄형벌문제의 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11년 95면 참조.

14) 李世清 <마약범죄형벌문제의 연구>, 중국검찰출판사, 2011년 146~147면참조.

15) 赵翔东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103면 참조.

원 중 중상층 및 핵심인물)의 마약이 홍수처럼 밀려오게 되고 그때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하류”에 처해 있는 기타 마약소비국도 필연적으로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외에 중국은 지역적 차이가 아주 심한 나라이기에 전국적인 입법이 사형을 보류하면 지방에서 특정된 상황 하의 마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의 사법적 제한은 분명히 입법적 폐지보다 중국 국가정황에 더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중국 마약범죄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제적인 문제이기에 국제차원에서의 협력 내지 국제정치의 추세와 밀접히 관련된다. 중국은 양대 마약생산기지의 부근에 위치해 있기에 가장 편리한 마약운수 통로의 하나이다. 하기에 중국 마약문제의 해결은 마약공급과 판매의 연결라인의 “상류”와 “하류”의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류”의 통제가 분명히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는 국제정치차원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금신월(金新月)”주변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 나라는 국내 정치국면이 불안정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통이 아주 불편하기에 그 정부에서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¹⁶⁾ 어떤 나라는 반마약전쟁에 참가하려는 의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예를 들면, 아편수입은 아프가니스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한다.¹⁷⁾ 이 나라가 마약을 금지하려는 충분한 적극성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적지 않는 나라는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법률에 근거하면 인도 국민은 허가증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할 수 있고 아편 및 그 제품도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판매하지 못한다).¹⁸⁾ 이런 문제들은 이미 중국 혼자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 마약원천을 차단하려면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의 사형제도는 비록 민중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결코 단순

16) 赵翔 등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67면 참조.

17) 杨玲、李明军 등 <마약복용, 중독치료문제연구---심리학으로부터의 탐색> 과학출판사 2010년 18면 참조.

18) 赵翔 등 <마약문제연구---글로벌시각에서 귀주의 마약문제를 보다>,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05년 43면 참조.

한 관념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경험적 차원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념형태의 차원에서 민중들의 잔혹함과 우매성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민중들의 가치선택을 “얼버무려 버리거나 줄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아니다. 마약현상이 민중들의 생활에 다시는 중대한 위해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들은 관대한 마약범죄입법을 용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의 사형제도를 굳이 보류하는 것은 결코 민의(民意)라는 “책임회피의 구실이나 방패”라기 보다는 민의가 경험적 차원에서의 마약범죄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굴절되거나 변형된 상태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